

## 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(주)우리카드
2. 제재조치일 : 2026. 5. 18.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 관	과태료 1,200만원
직 원 등	자율처리필요사항 2건

\*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제외

### 4. 제재대상사실

#### 가.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

##### (1) 고객확인 의무 위반

##### ① 카드 발급시 실지명의 확인 의무 위반

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특정금융정보법」이라 함) 제5조의2 제1항, 동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및 제10조의4 제1호 등에 의하면,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\* 등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\*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금융실명법」이라 함) 제2조 제4호 및 제3조 제1항,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

하지만 회사는 비대면 체크카드(무신용) 발급시스템 구축·운영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제출하고 휴대폰 인증 수단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주민등록번호

13자리 전체를 검증하지 않고 생년월일 및 성별에 한정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.

이에 따라 2021.1.1.~2021.9.15. 기간 중 회사는 고객 1,203명과 체크카드 발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검증하지 않아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않았다.

## ② 법인고객 카드 발급시 대리인의 대리 권한여부 확인 의무 위반

「특정금융정보법」 제5조의2 제1항, 동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및 제10조의4 제1호, 업무규정 제38조 제3항에 따라 고객을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(이하 '대리인'이라 함)가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위임장을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본인과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.

하지만 회사는 2021.1.1.~2022.6.30. 기간 중 법인 고객 5인의 대리인과 법인카드 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장 등을 통하여 대리인의 권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.\*

\* 대리인의 명함 또는 법인 주주명부를 첨부

### < 관련규정 >

1.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 제1항
2.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의2 제2항, 제10조의4 제1호
3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, 제3조 제1항
4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 제1호
5. 「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」 제38조 제3항

## (2) 약관 보고 등 의무 위반

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\*(금융약관)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(이하 '여신금융협회장')에 보고하여야 한다.

\*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함(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)

하지만 회사는 ㉠ 약관 및 ㉡ 약관을 각각 제정(2021.6.3., 2022.10.24.)하였으나, 약관 제정 후 보고기간(10일) 이내에 여신금융협회장에게 보고\*하지 않았다.

\* 본건 약관은 공정위가 유사한 내용의 근보증서를 표준약관으로 게시중인 점, '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, 방식, 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'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사후보고 대상에 해당

< 관련규정 >

1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54조의3, 제69조의2
2. 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」 제19조의22, 제23조의3